

# 협력사 신규 등록 및 운용 가이드라인

##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가이드라인의 구성

- 1)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사항
- 2)협력사의 변경사항 수정 등록 관련사항
- 3)협력사와의 거래정지 관련사항

## 3.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당사에서 운영하는 그룹웨어에 본 가이드라인을 상시 공개한다.
- 2)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당사에서 운영하는 그룹웨어에 변경후 7일 이내에 수정 등재한다.
- 3) 협력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 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 4.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 4.1 등록신청

신규 등록 희망업체는 화승알앤에이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 요청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부품 또는 상품 등의 구분에 따라 요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구매업체조사서(일반현황, 회사연혁, 매출구성비, 조직도, 설비현황, 인증서 등 포함)
- 2) 업체평가체크리스트(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평가)
- 3) 사업계획서(공장계획, 인원계획, 자금력, 경영자이력 등에 대한 평가)

### 4.2 업체평가

#### 1)평가기준

##### ① 부품업체

- 자재관리(100점), 품질관리(100점), 문항 및 점수(200점)

평점 = (득점/배점) × 100

- 승인 선정기준

80점 이상 : 등록승인

70~80점 미만 : 2개월 이내 재평가 실시

70점 미만 : 미등록

## ② FL,SL 외주 및 상품업체

- 생산관리(100점), 품질관리(100점)

평점 = (득점/배점) x 100

- 승인 선정기준

80점 이상 : 등록승인

70~80점 미만 : 2개월 이내 재평가 실시

70점 미만 : 미등록

### 4.3 평가 결과 종합

해당 부서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 4.4 등록 품의 및 승인

해당 부서는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하며, 등록 요청업체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하도급기본계약서, 개별계약서, 화승R&A표준크레임협정서, 납품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지정계좌등록확인서(우리은행 또는 외환은행) 등

### 4.5 등록실시

해당부서는 다음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 당사와 신규 등록업체는 하도급기본계약서, 화승R&A표준크레임협정서, 납품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 후, 한 부씩 보관하며, 당사의 원본은 기획팀에 이관 후 스캔본은 당사 그룹웨어에 지정계좌등록확인서와 함께 업체등록요청서 작성 시 첨부하여 업체코드를 회계팀으로부터 발급 받는다.

## 5.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

1) 당사의 협력사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당사의 해당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단, 대표자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변경, 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부서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 신임 대표자 인적 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 기업 투자계획

이 경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 6. 거래등록업체의 계약해제·해지

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